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(주철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493 발의연월일: 2024. 10. 2.

발 의 자:주철현·김문수·한정애

송기헌 · 송옥주 · 임호선

박정현ㆍ허 영ㆍ박균택

윤준병 • 황명선 • 이병진

조인철 • 이건태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

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,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 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, 도서의 관할분쟁,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, 해양의 이용 및 개발이 다변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가 명확한 육상과 달리해양관할구역은 이와 관련한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나,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또한 법률상 근거가 부재하여 재판의 결과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

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사회적·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획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·관 리·보전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과 획정 기준을 정하고, 관계 지방 자치단체 상호간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확인이나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함(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).
- 나. 해양관할구역획정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·변경, 해양관할구역획정안 등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).
- 다.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해양관할구역획정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(안 제 15조 및 제16조).
- 라.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할구역획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,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대한 합의안을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,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

회에서 획정안 또는 획정합의안을 심의・의결하도록 함(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).

- 마.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 해양관할구역을 결정하도록 하고,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1조).
- 바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2조).

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·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해양관할구역의 획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·관리·보전할수 있도록 하며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"이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(地籍公簿)에 등록 한 토지의 바다 쪽 경계로부터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 제1조에 따른 영해의 외측한계(外側限界)에 이르는 해역 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구역을 말한다.
- 2. "등거리·중간선"이란 서로 인접하거나 마주하는 2개 이상의 지 방자치단체의 기점(起點)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연결한 선 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

관할구역을 획정함에 있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 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해양관할구역의 획정·변경 및 유지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,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이 획정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한 「지방자치법」의 규정에 따른다.

제2장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원칙 및 기준 등

- 제5조(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 의 획정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.
 - 1.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해양접근성 확보와 이용에 관한 형평성
 - 2.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행정적·경제적 및 생활상 이익의 침해 최소화
 - 3. 해양의 효율적 이용
 - 4.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이나 관련 분쟁의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이 규정한 절차를 따라야

한다.

- 제6조(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하여야 한다.
 - 1.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
 - 2. 관할구역 획정 대상 해역(이하 "대상 해역"이라 한다)에 관한 역 사적 사실과 실태 및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
 - 3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도서(島嶼)의 행정구역
 - 4. 행정구역의 관할 변경 이력
 - 5.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
 - 6. 주민의 행정적 · 경제적 이익
 - 7. 대상 해역에 관한 사무처리 현황
 - 8. 대상 해역과 관계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현황 및 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3호의 기 준에 따른 해안선
 - 9. 등거리 · 중간선
 - 10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합의의 반영)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

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확인이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.

- 제8조(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,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·면·동의 해양관할구역) ①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, 「지방자치법」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(이하 "행정시·구"라한다) 및 읍·면·동의 해양관할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조례로 행정시·구 또는 읍·면·동의 해양관할구역을 정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, 시장, 군수 및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광역시장·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장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 등

- 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야 한다.

-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위촉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해양수산 및 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 1호에 따른 해양조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2.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직 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- 3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- 4. 「지방자치법」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
-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- 1. 제15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획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
 - 2. 제16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획정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

- 3.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양관할구역획정안
- 4. 제22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 획정 절차의 시작 여부
- 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·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
- 제11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2조(자료 제출의 요청 등) ①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료·서류 등의 제출 요청
 - 2. 이해관계인 ·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
 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에 의견을 밝히거나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다.
- 제13조(해양관할구역획정추진단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 업무를 전문적・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심의・의결사 항에 대한 보좌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관할구역획정추진단(이 하 "추진단"이라 한다)을 둔다.
 -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제15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획정기본계획의 입안
- 2. 제16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획정추진계획의 입안
- 3. 제17조에 따른 조사 및 측량 등
- 4. 제18조제1항·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양관할구역획정안 의 작성·수정 및 변경
- 5. 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안건 사전 검토 등
- 6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
- ③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해양관할구역획정지원단을 둘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, 해양관할구역획정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14조(전문기관의 지정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업무를 게을리 수행하는 경우
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·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장 해양관할구역 획정 절차

- 제1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·의 결을 거쳐 5년마다 해양관할구역획정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중・장기 해양관할구역 획정 추진 방향 및 원칙
 - 2. 제16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획정추진계획의 수립 방향
 - 3. 제2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획정 신청 수요조사 계획
 - 4.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
 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미리 협의하여야 하며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·고시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

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변경의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.

-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추진계획의 수립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할구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획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매년 해양관할구역획정추진계획(이하 "추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연도별 대상 해역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
 - 2. 해양관할구역 획정 관련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
 - 3.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해양관할구역 획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·고시된 추진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변경의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.
-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조사 및 측량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하기 위하여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」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현황에 대한조사·측량,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해양조사 및 해당 구역의 이용·관리 실태 조사 등 제6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에 따라 조사(이하 "조사등"이라 한다)를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 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③ 그 밖에 조사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- 제18조(해양관할구역획정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조사등을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획정안(이하 "획정안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30일의 범위에서 의견수렴 기간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획정안을 수정・ 변경하여야 한다.
 - ③ 그 밖에 획정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획정합의안의 제출 및 반영 등)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한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대한 합의안(이하 "획정합의안"이라 한다)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.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획정합의안을 반영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른 획정안을 작성하거나 수정·변경할 수 있다.
 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획정합의안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의견수렴 기간을 9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획정합의안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20조(획정안의 심의·의결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1항· 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획정안,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 의 결과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획정합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해당 획정안 및 획정합의안을 심의·의결한다.
 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·의결에 필요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조사 및 재조사 결과에 따른 획정 안의 작성 등에 대해서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.
- 제21조(해양관할구역의 결정 및 불복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을 결정하고,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결정은 「지방자 치법」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 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 -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판 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

-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.
-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만료되거나 제4항에 따라 다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에 따른 해양관할구역의 결정 및 통보·공고 방법, 제5항에 따른 해양관할구역의 획정 및 공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(신청에 따른 해양관할구역의 획정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신청(이하 "해양관할구역획정신청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- 1. 해양의 이용, 관리 및 보전에 있어서 관할구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
 -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 - 3. 이 법에 따라 획정한 해양관할구역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지 방자치단체의 기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에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해양관할구역 획정 절차의 시작 여

부를 결정하고,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해양관할구역 획정 절차의 시작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한다.
- ④ 그 밖에 해양관할구역획정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장 보칙

- 제23조(토지등에의 출입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의 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(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 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)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어장(漁場), 양식장을 포함한 공유수면(이하 "토지등"이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.
 - 1. 토지등에 출입
 - 2. 토지등에 있는 나무, 흙, 시설물, 그 밖의 장애물의 이전ㆍ변경
 - 3. 토지등의 조사등에 필요한 장비 등 적치
 - 4. 토지등을 임시도로로 사용
 -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토지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(이하 "소유자등" 이라 한다)에게 출입 일시, 장소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. 다만,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·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출입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출입 일시와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.

- 1. 토지등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
- 2. 토지등의 소유자등의 주소·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
-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토지등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일시, 장소 및 내용 등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·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후 14일이 경과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토지등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
- 2. 토지등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·거소 또는 그 밖의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
-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.
- 제24조(청문)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법원의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 전에 법원의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확정된 해양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획정된 것으로 본다.
- 제3조(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분쟁해역에 대한 유예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관할구역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분쟁 해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한다.
- 제4조(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중인 해역에 대한 유예조 치)이 법 시행 당시 「지방자치법」 제5조제5항부터 제10항에 따라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중인 해역은 매립지의 귀속 지 자체가 최종 결정된 후에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한다.